「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취지 및 해설

목 차

□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 경과

□ 언론중재법 개정안 – 취지 및 해설

Ⅰ. 개정 취지 및 주요 골자 ····· 71

Ⅱ. 사이버상 인격권 침해 배제청구권의 명문화 ····· 72

Ⅲ. 인터넷상 침해적 보도의 확산 및 전파에 대한 대책 ····· 78

Ⅳ. 댓글 피해구제 관련 조항 ····· 85

Ⅴ. 복제기사 관련 구제 조항 ····· 87

Ⅵ. 검색에 의한 피해구제 방안 ····· 91

Ⅶ. 본조의 적용 관련 조항 ····· 93

Ⅷ. 부칙 ····· 96

Ⅸ. 관련 개정 ····· 9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경과

• 2014. ~

잘못된 원 보도의 복제 기사 또는 기사 댓글 및 검색으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 사례 발생, 관련 구제방안 검토 시작

• 2014. 10.

여야 의원들, 인터넷매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국정감사 시 지적

– 뉴스펀딩 등 뉴미디어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박대출 의원)

– 수정이나 삭제 등 피해구제가 이루어졌으나 원 보도가 인터넷에 전파되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박창식 의원)

– 인터넷매체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방법 등 언론중재법 개정필요(박혜자 의원)

– 인터넷매체에 대한 정정보도 등이 피해구제에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제고(이상일 의원)

• 2014. 12. 4.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에 관한 정책심포지엄 개최

– 주　제 :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 사회자 : 양승목(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발표자 :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 토론자 : 박정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심석태(SBS 뉴미디어 부장)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정혜승(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

• 2015. 1.

2015년 위원회 중점과제로 "디지털 미디어 특성을 반영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 설정

• 2015. 3.~10.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위원장 주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사무처 내부 토론회 진행

– 조정대상을 펌기사 및 댓글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1차)

– 정보통신망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도입 검토(2차)

– 검색에 의한 피해구제 방안 검토(3차)

– 게시자의 이의절차를 명문화하고 법원에 불복 · 제소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 검토(4차)

– 신생 뉴스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5차)

– 언론사 등 피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침해배제청구권의 조정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6차)

---

* 이하 '언론중재법'으로 약칭.

• 2015. 5. 28.
서울중재부장 간담회 개최
– 참석자 : 김용관(서울제1중재부장), 강태훈(서울제2중재부장), 이태수(서울제4중재부장), 이은신(서울제6중재부장), 오재성(서울제7중재부장)

• 2015. 6.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8명) 자문 의견 수렴
– 양경승(사법연수원 교수), 양철한(수원지법 부장판사), 김경환(법무법인민후 대표변호사), 김재형(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본권(한겨레신문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 유봉석(네이버 뉴스플랫폼센터장), 김유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2015. 8. 20.
언론인 등 초청, 개정 언론중재법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주 제 :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사회자 : 박성희(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학부 교수)
– 발표자 : 양경승(사법연수원 교수)
– 토론자 : 구본권(한겨레신문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김동규(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유봉석(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 윤성옥(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 2015. 9.
국정감사 시, 복제기사 및 댓글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 마련 촉구
– 잘못된 보도의 전파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 마련(박창식, 윤재옥 의원)
– 위법한 복제기사 및 기사댓글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한선교 의원)

• 2015. 10. 13.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개정안 최초 공개)
– 후 원 : 신성범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주 제 :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 –
– 사회자 : 이상원(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자 : 김은태(네이버 법무실 부장), 윤영철(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이병선(카카오 CR팀 이사), 조현욱(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조형래(조선일보 디지털뉴스본부 취재팀장)

▪ 언론중재법 개정안 취지 및 해설

I. 개정 취지 및 주요 골자

현행 언론피해구제법제는 아날로그시대에 오프라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수 없음.

이 개정안은 디지털 정보통신망에서 행해지는 언론보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리적으로 구현 가능한 범위에서 명예 및 인격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구제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함에 목적이 있음.

이 개정안의 골자는 ①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명문화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인격권 침해 표현행위의 피해구제를 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인터넷 보도 기사에 대한 댓글의 인격권 기타 권리 침해행위의 구제방안, 그리고 ③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와 법원에서 구제가 확정된 기사와 동일한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확산되는 경우 구제방안에 관해 ④중재위원회에 조정 · 중재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하는데 있음.

본 개정안은 그 개념과 구현방안에 관해 논란이 많은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전반적으로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명예훼손법의 법리와 새로이 인정 · 확립된 인격권 법리를 기반으로 인터넷 시대에 큰 과제로 대두되는 언론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1)]

최근 우리 대법원 및 각국의 판례와 지배적인 학설을 참고, 반영하여 법리적으로 논란이 없고 구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방안과 절차를 명문화하였음.

본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현행 자율규제의 관행을 전제로[2)] 이를 인정하면서, 다만 자율규제로 다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함.[3)]

---

1)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이나 가명에 의한 정보유통이 일반화되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이 쉽게 게시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게시된 표현물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 표현물로 인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중대해질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그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에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수한 이용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더 커서 다른 어느 경우보다 타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2) 포털 등 인터넷 매체들은 자신들이 노력으로 욕설 등 불법적 메시지를 걸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평가되고 고무되어야 함. 사업자 차원의 사전적인 자율규제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한 법률로는 2013년 영국 명예훼손법이 피해자의 고지에 따라 웹사이트 오퍼레이터가 가해 메시지의 제거 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사업자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공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 게시 공간에서 발생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Ⅱ. 사이버상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의 명문화 – 제17조의3 신설

기존의 확립된 인격권 이론[4]에 기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명예 및 인격권 보호[5]를 위해 침해배제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함.

그 내용은 요컨대 인격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침해상태를 야기하거나 관리하는 자에 대해 그 금지나 정지 또는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데 있음.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이미 독일에서 학설상 확립된 개념으로서, 판례에 의해 발전되어 왔고, 영국은 최근 제정된 2013년 명예훼손법에서 명예훼손적 진술의 삭제 및 전파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우리의 경우에도 최근 대법원은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확인 적용한 바 있음(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판결).

법리적으로 볼 때,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negatorishe Anspruch, actio negatoria)의 법리에 의하면 물권을 가진 자는 그에 관해 방해 상태를 야기 · 지배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고의 · 과실 즉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고 (타인이 야기하였어도)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6]

또 현행법상 특허권이나 무체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특허법 제126조, 실용신안법 제30조, 저작권법 제123조 등).

인격권은 인권의 체계상 재산권보다 우위에 있는 권리이므로 위 권리들에 실정법상 이미

---

4) 인격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타인의 권리, 특히 표현의 자유와 비교하여 우월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그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윤곽적 권리이지만, 일단 인정되면 그 성질상 대세적 · 절대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거나 침해의 우려를 야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로서 타인에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그 주체가 생존하는 한 그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5) 인터넷에서 표현행위는 용이성, 신속성, 전파성, 영속성의 특성을 가지며, 그로 인한 권리 침해 효과도 그에 상응하기 때문에 사이버상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도 이들 특성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신장되고 있음에 비해, 그에 의해 피해받는 자의 구제 방안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 상충하는 이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시대에 명예훼손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더욱이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나아가 인터넷언론의 보도는 웹에 보존되고 언제나 검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구제에 큰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기존 오프라인 미디어의 보도는 일단 보도된 후에는 다시 발행되지 않는 한 망각될 수 있었지만, 인터넷 언론보도는 영구적으로 웹에 보존되어 열람 · 검색에 의해 언제든지 피해가 재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신문의 기사는 웹에 누적 축적되고 언제 어디서나 검색을 통하여 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당 보도의 명예훼손 행위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름이 없다. 최근 대법원이 인격권 법리를 동원하여 기사삭제청구권을 새로이 인정한 것도 이러한 여러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6)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인정되고 있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격권에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으로 생각됨.

본조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 내지 '망각권'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법리적으로 가능하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명문으로 구현하는 것임.[7]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소송법상 별개의 소송물이며 별개의 청구권원(청구원인, 영미법상 소인, cause of action)임.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나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언론중재법상의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와 별개의 사건으로 다루어지게 됨(제17조의3 제4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미디어 피해구제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됨).

따라서 본조의 권리행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의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음.

[조문 내용 – 제17조의3 신설]

제17조의3(정보통신망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① 정보통신망에 의해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명예 등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본조 및 제18조의2에서 "피해자"라 한다)는 그 침해를 야기하거나 침해상태를 관리하는 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증명하여 계속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침해의 배제나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도 내용이 허위이고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2. 보도 내용 자체에서 보아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피해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사가 정보통신망에 전파 · 확산된 경우 해당 언론사 등에게 그 삭제 등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언론보도가 사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현저히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어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관련 언론사 등에게 변경된 사정에 따라 해당 보도의 내용을 수정 · 보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신청과 함께 또는 별도로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안 후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 ·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 행사에 관하여는 이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7) 정보보호법상 거론되는 '잊혀질 권리'는 원래 주로 적법하게 제공되거나 생성된 정보의 삭제 내지 보완에 관한 것이지만, 본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방해배제청구권은 허위 또는 핵심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 또는 사후에 부정확하게 된 정보로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17조의3 해설]

제1항: 침해배제청구권의 요건

제1항 제1호: 허위임을 이유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위사실의 정보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며, 허위 정보의 계속 유포는 명예 보호라고 하는 사회의 공익에 우선할 수 없음.

이 경우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비교 형량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사가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만을 판단할 것이고, 허위사실을 포함한 경우라면 게재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삭제를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판결). 즉, 언론이 기사 게재 시 최선을 다하여 사실확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해당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후 진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면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8)]

제1항 제2호: 인격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정보의 제거 청구

유럽인권재판소나 독일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사생활의 핵심영역(특히 성적 영역 및 내밀영역)에 관한 정보는 절대적 보호를 받으며 보도 기타 공익목적에 의해 제한받을 수 없음.

제1항 제3호: 중대성 요건 – 피해자의 권리 남용 억제 및 표현의 자유 보호

기사삭제와 같은 표현행위의 사후제거를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 형량하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인격권 자체에 기한 보도금지(방해예방청구)나 사후 기사삭제(방해제거청구)의 경우에는 원고(피해자)가 해당 보도가 '진실이 아니라는 점' 또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통하여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야 함과 동시에 방해예방이나 방해제거의 필요성 역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결정,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다만, 허위의 언론 기사로 인해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사전금지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이 규정의 반대해석에 의해, 예컨대 역사적 사건에 관한 보도가 허위임이 판명되어 추후의

8)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상당성이 있는 경우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지만(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이 경우 독일 판례는 주관적 정당화 사유로 보며, 일본 판례는 책임조각 사유로 취급하고 있는 것(최대재판소 61. 6. 11. 民集 40권 4호 872쪽 등)을 참조하면, 허위가 입증된 침해적 보도는 객관적으로 여전히 위법하고 침해배제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게 된다(대법원 2013. 3. 28.선고 2010다60950판결).

충분한 언론보도에 의해 시정되고, 그 오보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삭제청구권의 보호이익이 거부될 수 있을 것임.

제2항: 피해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 위법한 침해적 보도를 퍼간 게시자에 대한 보도언론사의 협조의무

언론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보도기사를 삭제하거나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거나 직권조정에 의해 그러한 조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언론사 등은 해당 보도와 동일한 복제 · 전파물에 관하여도 삭제 등 필요한 구제를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다. 즉, 중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 · 중재하는 경우 필요하면 피신청인 언론사로 하여금 대상보도를 퍼간 복제 · 전파물 게시자에게 삭제 등 기타 필요조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법적 근거는 위법한 가해적 표현행위를 한 자는 차후 제3자에 의한 복제 · 전파행위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는 한편,[9] 기사에 첨부된 언론사의 표명에 의하더라도 언론사는 그 기사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며 제3자에 의한 무단 전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제3항: 사후적으로 부정확하게 된 정보의 수정 · 보완청구

예를 들어, 제1심의 유죄판결이 상소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1심 판결에 관한 보도는 보도 당시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삭제될 수 없고, 다만 피해자는 그 보도 매체에 대해 후에 무죄로 판결되었음을 추가(원 보도에 주석 형식으로) 또는 보완(후발 사안 설명에 링크)하는 등 방법으로 업데이트하라고 청구할 수 있음.

언론중재법상 기존의 추후보도청구는 제1심의 유죄 판결 후 내려진 무죄판결을 1회 보도할 것만을 구할 수 있을 뿐, 원 보도에 위와 같은 수정 및 보완을 청구할 수 없음.

제4항: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이나 기존의 정정, 반론 및 추후보도청구권과 별도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관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4항 단서: 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

법리상 인격권에서 나오는 위법한 침해적 기사의 삭제청구권은 주체가 생존하고 있는 한 시

9) 명예훼손법상 원진술자가 그 명예훼손적 진술을 전파한 타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는 타인이 원진술자의 명시적 · 묵시적 수권이나 동의하에 전파한 경우, 합리적으로 보아 그러한 전파가 예상될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전파가 원진술의 자연적이고 개연적인 결과인 경우를 들 수 있다(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 207쪽). 이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상 보도는 실제로 쉽게 전파되고 링크된다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언론사는 그 복제나 링크에 의한 전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보게 된다[위의 박용상(2008), 1262쪽].

효로 소멸할 수 없는 것이지만,[10] 침해배제청구권이 무제한 청구되어 언론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를 고려하여 피해자가 침해배제청구권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중재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게 제한함. 다만, 법원에 청구함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5항: 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에 관해서도 정정 · 반론보도 청구에서 당사자능력을 확장하는 기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음.

[참고 Q&A][11]

Q. 개정안이 시행되면 언론사 기사에 대한 삭제청구가 남발되고 언론사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A. 먼저 삭제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사는 정보통신망에 존재하여 열람 · 전파될 수 있는 기사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되어 있는 기사라 하더라도 독자들의 열람이 차단된 것이라면 삭제할 필요는 없어질 것입니다(그 경우 데이터베이스 기사에는 삭제 판결 또는 삭제 조정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기하여야 할 것임). 디지털화되지 아니한 아날로그 형태의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삭제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삭제청구의 요건으로서 개정안은 ①허위로 입증된 기사의 중대한 권리 침해, ②인격의 핵심영역에 대한 명백한 침해, ③권리 침해의 계속성 등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여 삭제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입법에 의

10) 원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하거나, 제소기간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그 우려를 야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침해 또는 우려가 존재하는 한 행사될 수 있다(기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나 원상회복청구에 대해서는 민법상 시효가 적용되고, 언론중재법상의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는 3개월 및 6개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독일 법제에 의하면 인격권은 대세적 효력에 의해 그 방해자에 대해 고의 · 과실을 불문하고 방해상태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는 그 주체가 생존하는 한 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영국의 2013년 명예훼손법 역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1년으로 정하여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위 기간 제한에 의해 피해구제를 거부함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고, 특히 악의적 허위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위 인정션(injunction) 기타 형평법상의 청구권에는 1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영국 2013년 명예훼손법 제8조, 1980년 기간제한법 제32A조, 1996년 명예훼손법 제5조제2항 및 제5항).

11) 개정안 제17조의3에 따른 '침해배제청구권'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침해의 배제나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사의 삭제, 수정 · 보완 등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Q&A에서는 침해배제청구의 내용으로 기사의 삭제를 구하는 경우를 전제하여 침해배제청구를 기사삭제청구로도 언급하였음.

한 삭제청구권 행사의 범람에 대비하여 피해자가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중재위원회에 삭제청구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인격권에서 나오는 위법한 침해적 기사의 삭제청구권은 법리상 주체가 생존하고 있는 한 시효로 소멸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기사삭제가 무제한 청구되어 언론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를 고려한 것입니다.

Q. 개정안과 같이 새로운 입법으로 언론사의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청구권을 인정하면, 소급입법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요?

A. 개정안이 삭제청구권의 요건으로 명시한 것을 보면,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사는 과거에도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었던 것이며, 다만 현실상 간과되어 왔을 뿐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이 누구나 향유하고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인격권을 근거로 그에서 나오는 삭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재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마련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허위 기사의 존재는 현재 관련 피해자에게 계속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그것을 제거를 하는 것이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동일 기사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 등과 침해배제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침해배제청구를 통해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까지 할 수 있는데, 정정보도청구 등이 필요한가요?

A. 법률상 정정 및 반론 ·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침해배제청구는 각기 별개의 청구권이고 그 요건 및 효과와 행사절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정 · 반론보도청구는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지만, 침해배제청구권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위 기간 경과 후에도 그 피해사실을 안 후 1년 이내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종전 법에 의하면 조정 결정에 의한 인터넷 기사의 정정, 반론은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일정 시간(실무 관례에 의하면 통상 48시간) 이를 노출하여 행하도록 하였을 뿐, 그 언론사 사이트에는 원래의 위법한 침해적 기사가 그대로 남았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기사 자체를 삭제 · 정정할 청구권을 별도로 갖게 됩니다. 그 반대로 삭제청구가 인정되어 해당 기사가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독자들은 원 보도에 잘못이 있다는 내용의 조정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정정 또는 반론을 보도하여 달라는 청구는 여전히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들 권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Ⅲ. 인터넷상 침해적 보도의 확산 및 전파에 대한 대책 – 제18조의2 신설

[입법 취지 – 제18조의2]

본조는 위 제17조의3에서 명문화된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을 인터넷 보도의 댓글 및 확산 · 전파되는 펌기사에 적용하되 피해자를 위한 일괄적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함.

본조는 인터넷상 침해적 보도에 수반하여 또는 그것이 확산 · 전파되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이 심리한 또는 심리 대상 사건의 침해적 보도에 달린 댓글, 그리고 그와 동일한 내용이 인터넷에 확산되는 이른바 펌기사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 청구를 중재위원회가 함께 관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현행법제상 언론 미디어가 아닌 개별 이용자에 의해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권리 침해적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해당 게시물을 호스팅하는 콘텐트 사업자(포털, ISP 등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웹사이트 오퍼레이터)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삭제, 차단 등 임시조치를 행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그에 따라 피해자는 침해적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에, 그 보도기사에 수반되는 댓글 또는 확산되는 동일한 내용에 의한 피해구제는 그 글이 실린 사이트(언론사 사이트 또는 관련 콘텐트 호스팅 사이트 등)의 관리자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했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보도와 그에서 파생된 피해에 관해 구제 기관 및 구제 청구 절차가 상이하고 복잡하여 민원의 소지가 컸고, 일괄적 포괄적인 원스톱서비스의 필요성이 컸음.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일괄 구제의 편의를 제공하게 될 뿐 아니라, 피신청 언론사에게도 동일 사안에 관한 분쟁의 일괄 해결이라는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임.

[참고 Q&A]

Q.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해 임시조치 등 강력한 보호를 받는데 또 개정안과 같이 중재위원회의 구제절차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요?

A.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개인(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게시글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당 게시글을 호스팅하는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 차단 등 임시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에 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언론중재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언론 기사가 일반적 정보와 달리 취급받는 이유는 언론(미디어)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기능 때문에

이를 사기업인 정보통신사업자의 판단에 따른 사적 규제에 방치할 수 없고, 반드시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확보된 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은 언론 기사에 달린 위법한 댓글 및 위법한 기사의 전파 · 복제물(이른바 펌기사)에 관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보에 관해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언론(미디어)의 자유가 향유하는 특별한 보호의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실용적으로도 불편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이를 위한 새로운 구제절차를 만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펌기사에 관해 보면, 언론사의 기사를 퍼간 복제 · 전파물 역시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보호를 받음이 당연하고(언론의 자유는 전파의 자유를 포함하며, 객관적 사실을 전하는 뉴스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그 펌기사가 게시된 사이트의 운영자(사적 주체임)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의로 이를 삭제 등 임시조치를 하는 것은 그 게시자의 전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현행 포털업계의 관례에 의하면, 인터넷 포털사들은 인터넷언론사의 기사가 포털의 뉴스사이트에 게시되고 있는 동안에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도 임의로 임시조치하지 않지만, 일단 포털이 제공 · 관리하는 타 사이트에 전파 · 복제된 경우에는 일반 정보와 같이 취급하여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포털사들은 그 펌기사가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내용인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포털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위한 인력과 비용의 부담이 크고, 그 판단 결과의 적부에 대한 위험도 부담하게 되며, 그 때문에 포털사들은 공동으로 자문기구(KISO)를 설치하여 그 정책규정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를 시행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음), 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복제기사의 운명이 좌우된다면 언론보도에 대해 헌법이 부여하는 보장이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나 중재위원회가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한 보도의 전파 · 복제물에 관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기타 보호조치를 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정보통신사업자나 기타 사이트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기사의 댓글(comment)은 게시자 개인들의 표현행위(이른바 이용자생성콘텐트, user-generated content, UGC)이지만, 그것은 인터넷언론이 설정한 의제에 관해 독자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미디어의 저널리즘 활동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새로운 유형의 상호작용적 · 쌍방향적 저널리즘의 개념, 유럽인권재판소 2013. 10. 10. Delfi v. Estonia 판결 및 동 사건의 2015. 6. 16. 대심판부 판결 참조), 이러한 UGC도 언론사 사이트에 게시되면 그 언론사의 기사와 같은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 인터넷 기사의 댓글 시스템의 설치 · 운영 · 관리는 인터넷언론사가 행하는 것이며, 거기에 타인의 권

리를 침해하는 이용자의 댓글을 제거하지 않은 인터넷언론사는 게시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및 위 유럽인권재판소 Delfi 판결 참조). 그리고 댓글의 위법성 여부는 해당 기사의 위법성 여부 판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사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한 중재위원회가 댓글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경제상 · 실무상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 때문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2의 조항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법리상 및 실제상 어려운 언론보도의 댓글 및 펌기사에 관해 중재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정안에 의하면 인터넷언론 기사나 그 댓글 및 복제 · 전파물은 헌법상 언론(미디어)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 판단 및 규제 여부를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임의적 규제에서 제외시키고, 언론보도에 관한 분쟁 처리 관할권을 갖는 중재위원회에 일원화하여 피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언론의 자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기사는 쉽게 전파 · 복제되고 그 침해적 효과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 그 구제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부인될 수 없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보도 및 그와 관련한 피해를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정보통신사업자, 사이트 운영자 또는 포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부문에 관해서는 법적 판단의 부담과 그 오류로 인한 책임부담에서 해방되게 되므로(개정안 제18조의2 제7항) 개정안은 이들을 위해서도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Q. 개정안에 의하면 댓글, 펌기사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상호 충돌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또 개정안과 같이 중재위원회의 관할을 확대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권한과 중복 또는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요?

A.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 행하는 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작성되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중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관련된,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정보에 관해서만 인터넷언론사나 웹사이트 운영관리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조정 · 중재를 행하게 될 뿐, 그 밖에 인터넷에 유통되는 막대하고 폭증하는 개인에 의한 일반적 위법 · 유해 정보에 관해서는 여전히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할합니다(주지하는 바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버 정보의 사회적 · 국가적 법익 침해 여부에 관해 모니터하고 제재하는 일에 엄청난 양의 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관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기사에 달린 댓글과 펌기사의 경우인데 이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댓글에 관하여 보면, 개정안은 중재위원회가 온라인상의 모든 댓글이 아니라, 인터넷언론사나 포털 뉴스가 운영 · 관리하는 댓글 시스템에 게시된 댓글에

대한 조정 · 중재 신청만을 관할하게 하고 있습니다. 댓글은 개인이용자의 표현행위(UGC)이지만, 그것은 보도 내용의 일부를 형성하여 미디어의 저널리즘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적 · 쌍방향적 저널리즘의 개념, Delfi 판결 참조), 개정안에 의하면 중재위원회는 언론사나 포털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 관해 그들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조정 · 중재를 처리하게 됨에 비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구제는 피해자가 위 언론사 댓글 이외에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댓글(comment)에 관해 개개 게시자를 상대로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어 양자는 분쟁물 및 구제 방식에 명백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위법한 침해적 펌기사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사의 기사를 퍼간 복제 · 전파물 역시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펌기사가 게시된 사이트의 운영자(사적 주체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의로 이를 삭제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개 펌기사 게시자를 상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밖에 없으나 그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법한 침해적 기사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펌기사를 수정 · 삭제하여 달라는 구제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일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정안이 신설하는 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절차는 다음의 점에서 기존 방송통신심의위 절차와 구별되기 때문에 양자간의 관할에 충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분쟁물은 이미 법원이나 중재위원회에서 위법성이 판단된 해당기사와 동일하게 확인되는 펌기사에 국한되고, 둘째 그 구제방식도 펌기사 게시자 개개인이 아닌 그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를 피신청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위법한 침해적 언론 기사와 그 펌기사를 일괄하여, 그리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로이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개인법익 침해정보에 관해서는 정보통신사업자(기사 댓글의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나 포털사업자, 펌기사에 관해서는 그것이 게재된 해당 웹사이트 오퍼레이터)가 제1차적 자율규제 주체로서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구제가 거부된 피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1,2항). 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개개 게시물에 관해 게시자의 실명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상당한 기간과 어려움이 수반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에서 조정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심의위 산하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부는 60일 이내에 합의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에 건의하게 되고, 심의위에서는 양 당사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이상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절차 등에 관

한 규칙 참조). 이러한 절차를 대량으로 게시되는 댓글이나 순식간에 무제한 퍼져나가는 펌기사에 관해서도 적용한다면, 피해자의 구제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상 정보 내용 규제에 관한 일반법률이고, 언론중재법은 사이버언론에서 생기는 분쟁 해결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양자 간의 충돌은 법적으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Q. 펌기사 피해는 저작권 법리를 원용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여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이를 위해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하나요?

A. 저작권법에는 피해자가 인격권 등 권리 침해적 펌기사를 삭제 · 수정하도록 구제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법은 인격권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아닌 저작권자 여기서는 언론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언론사는 기사를 퍼가 게시한 개인 또는 그것이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그 저작권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테지만 그것은 일반 민사적 구제절차에 의해야 하며,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뿐, 저작물이 개인법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혀 심의하거나 조정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하면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언론사의 청구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기사의 펌글을 삭제 또는 게시 중단할 의무가 있으나, 피해자가 언론사로 하여금 그러한 청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법원이나 중재위원회에 의한 기사의 위법성 및 펌기사의 동일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개정안은 그러한 절차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구제청구의 피청구인 – 사이트 관리자]

침해적 댓글 및 펌기사에 관한 피해자의 구제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글이 게시된 사이트 관리자를 상대방(피신청인)으로 함. 사이트 관리 · 운영자의 이용자와의 이용약관에 의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일반적 주의 의무에 기해 사업자 등은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된 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함(2013년 제정 영국명예훼손법 제5조(Operators of websites);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및 유럽인권재판소 Delfi 판결 참조).

개개 게시자(인터넷 이용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면 순식간에 무한대로 증식하는 다수 게시물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함이 어렵고 또 가명 게시가 일반화되어 있는 현행 인터넷 관행으로 보아 게시자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또 게시자의 익명의 표현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임.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

개정안에 의해 명예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댓글 게시자나 펌기사 전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구제 조치에 이의 있는 게시자 등의 이의 및 의견 제시 절차를 명문화하고, 그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의한 사후적 사법심사의 길을 터놓았음. 또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 제기하는 게시자는 실명을 밝힐 필요 없이 인터넷 아이디(또는 이메일 아이디)만으로 이의 등 행위를 할 수 있게 함.

[참고 Q&A]

Q. 개정안에 의하면 게시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조정절차에서 그의 게시물이 삭제되도록 조정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그러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A. 개정안에 의하면 피해자는 댓글의 경우 인터넷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게 되고, 위법한 기사의 펌기사는 그 펌기사가 게시된 사이트의 관리자를 상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삭제대상인 정보의 게시자는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비추어 불가피하고 사이트 운영자의 지위 및 책임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하에서 상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에는 익명 또는 가명의 게시가 관행화되고 있어 게시자 개인의 신원확인과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은 극히 어려우며, 관심을 끄는 인터넷 보도는 펌과 링크에 의해 신속하게 대량으로 퍼져나가고, 그러한 기사에는 수천,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개개 댓글이나 펌기사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조정신청을 하고 또 중재위원회가 그들을 상대로 통지와 출석을 요구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각 게시자로서도 가볍게 쓴 글 때문에 신원이 노출되거나, 중재위원회에 출석을 요구받는다면 역시 불편하고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둘째, 위법한 침해적 댓글이나 펌기사가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것은 이들이 그 게시를 가능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이트 관리자의 의무는 제국에서 널리 제도화되고 있습니다[2013년 제정 영국명예훼손법 제5조(Operators of websites),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및 유럽인권재판소 Delfi 판결 참조].

또 이들 사이트 운영자는 댓글 또는 펌기사 게시자 확보에 영업상의 이익을 가지며, 쉽사리 피해자의 삭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게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견지한

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은 피해자의 권리 침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관해 어려운 판단의 부담에서 벗어나 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삭제를 행하면 면책되게 됩니다.

셋째, 개정안은 게시자를 조정절차에 참여시키지 않는 대신 게시자가 그에게 불리한 조정결과를 통보받고 그에 이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이 절차에서는 게시자의 인터넷 ID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익명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됩니다), 나아가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사법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은, 조정 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 게시 후 7일 이내,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 결정 후 10일 이내라는 단기의 법정 기간을 정하고 있어 게시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정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개정안은 게시자가 알지 못했음을 소명하여 소정기간 내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방안 및 절차도 정보통신망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본조의 각종 문서는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신설된 본조의 시행상 필요한 통지, 고지, 송달, 기타 의사표시의 전달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이해관계를 갖는 게시자 등이 이의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게시한 사이트의 게시판에 집단적 · 포괄적 게시의 방법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음.

[위법한 기사 · 댓글 및 펌기사의 검색 배제]

위법함이 확인된 보도 기사 및 그 펌기사 등의 검색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방안을 마련함. 해당 보도 기사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 기사 작성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기사가 삭제 · 정정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검색서비스에 의해 삭제 · 정정되기 전의 기사 또는 수정되지 않은 동일한 내용의 펌기사가 계속 검색되는 경우 피해는 상존하며, 실제로도 그 구제 없이는 완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외국 검색사업자도 우리 법에 의한 적법한 구제조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외국 검색사업자와 협의에 의해 필요한 협력 방안을 강구함.

Ⅳ. 댓글 피해구제 관련 조항 –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조문 내용 – 제18조의2 ①, ②]

제18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보도 피해의 구제) ①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보도에 관하여 독자 등의 글(음성, 영상 기타 메시지와 다른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댓글"이라 한다)의 게시를 허용하는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댓글의 삭제 등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에 관해 조정이 성립하거나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댓글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지체없이 위 조정결정 등의 내용을 댓글 게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접근차단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 해설]

위법한 댓글의 피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여 왔고, 언론사 등은 자율적으로 위법한 침해적 댓글에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아니한 댓글이 존재할 수 있음.

제1항: 위법한 침해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 ·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중재위원회에 구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

유럽인권재판소 2013. 10. 10. Delfi v. Estonia 판결은 댓글 시스템을 운영하여 독자의 댓글 게시를 허용한 온라인 뉴스 서비스의 운영자는 명예훼손적 진술이 공표되는 것을 방지할 기술적인, 수작업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그 댓글에 의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

이와 관련해 우리 대법원(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은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는 인터넷 게시공간이라는 위험원을 창출 · 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게시공간 안에서 발생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어,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음.

또 대법원은 단순한 댓글도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08. 7. 15. 선고 2008도2422 판결).

기사에 대한 조정신청과 동시에 댓글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는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의 조정신청과 함께 그 보도에 달린 침해적 댓글에 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에서 해당 보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말소, 정정 등의 취지로 조정 합의되거나 조정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해당 보도에 달린 댓글에 관하여도 그 취지에 따라 말소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함. 필요한 조치로는 위법한 침해적 댓글의 말소 또는 접근 차단, 반복적 침해 댓글 게시자의 계정 정지, 해당 보도의 댓글란 폐쇄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기사 본문은 적법하나 댓글이 위법 침해적인 경우: 중재위원회는 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의 조정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또는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보도에 달린 위법한 내용의 댓글에 관해 조정을 행할 수 있음(유럽인권재판소 Delfi 판결 참조).

언론 보도는 적법하나 그에 달린 댓글이 위법하게 침해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실제로도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음), 양자의 위법성 및 침해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

댓글 피해 사례: MBN은 2015년 2월 21일 '언니들의 선택'이라는 예능프로그램에서 "20대 여성들이 보는 남자의 기준"과 관련하여 세 명의 여성이 "연봉 5천만원 이상", "외제차" 등을 언급하는 주제 VCR을 방송했는데,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댓글이 붙었다. 위 3인의 여성(피해자들)이 MBN을 상대로 보도 및 댓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왔는데, 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를 방송하고 문제 댓글을 삭제하는 동시에, 앞으로 관련 영상이 발견되는 URL을 피해자들이 지적하면, MBN이 댓글 게시자에 연락하여 삭제에 협조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졌음.

SNS 댓글의 처리: 특히 외국사업자(Google, Facebook, Twitter 등)의 경우 중재위원회 계정으로 본 기사에 대한 조정결과 및 언론사의 댓글 처리 결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함.

V. 복제기사 관련 구제 조항 – 제18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조문 내용 – 제18조의2 ③]

> 제18조의2 ③ 피해자는 이 법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의해 삭제, 정정 등 구제가 확정된 것(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과 동일한 보도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복제 · 전파된 경우 그 복제 · 전파된 게시물이 소재하는 인터넷 공간의 관리자(이하 '사이트 관리자'라 한다) 등을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또는 반론 게재 등 필요한 구제를 위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해설]

위원회의 조정결정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기사의 삭제 및 정정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새로 도입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해 원 기사를 복제 · 전파한 자를 상대로 그 취지에 맞도록 삭제 ·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복제 · 전파기사가 소재하는 사이트(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를 관리하는 자에 대해 그 취지에 따라 삭제 또는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함.[12] 본조 제3항은 실체법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을 정보통신망의

12) 피해자가 특정 표현행위에 관하여 부작위(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에서 승소하게 되면, 피해자의 승소판결은 명예훼손적 내용의 표현행위자뿐 아니라 그 동일한 정보를 전파 내지 배포하는 모든 주체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독일의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청구는 기사의 작성자나 발행인뿐만 아니라, 간행물의 출판과 배포에 관여했거나 장래에 협력할지도 모르는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부작위청구의 상대가 되는 가해자란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방해를 야기하거나 그 행위가 침해의 우려를 야기하는 자 모두를 의미하며, 이들은 승소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그 방해상태를 배제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방해자 각자에 대하여 독자적인 청구권을 가지며, 표현행위자와 전파자에게 별도로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Handbuch des Äußerungsrechts, Verlag Dr. Otto Schmidt KG, Köln, 4. Auflage, 1994. RN 12.51.).

그러나 한편, 표현행위자에 대한 승소판결은 이들 전파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있는 채무명의를 얻으려면 별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독일의 실무 관행을 보면 위법한 표현행위를 행한 표현행위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가지고 전파자들에게 그 방해의 배제 내지 제거를 최고하면 전파자들은 그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별소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 최고에 응하지 않는 전파자는 판결에 의해 위법함이 확정된 메시지의 전파를 감행한 것으로 결국은 별소에 의해 표현행위자와 같은 책임이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Wenzel, a.a.O. 4. Aufl. RN 12.65.).

위와 같은 기존의 법리를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자와 전파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면, 패소한 원래의 게시자(또는 언론사)는 동일한 메시지를 인수 · 전파한 자들에게 그 삭제나 봉쇄를 위해 힘써야 할 의무가 있고(이 경우 게시자와 전파자 간에는 계약관계 등 일정한 연계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원래의 게시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가지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하거나 이를 수록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모든 웹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제된 메시지의 삭제나 봉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위법함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메시지를 수록 또는 관리하는 자가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가 새로운 가해자로서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이다[이상 앞의 박용상(2008), 1349 – 1350쪽 참조].

특성에 비추어 절차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

즉, 복제 · 전파된 침해적 기사에 관해서는 해당 펌기사의 게시자 또는 링크 설정자 이외에 해당 펌기사 소재 사이트의 관리자(특히 포털사)에게 차단 내지 삭제청구를 할 수 있고, 특히 검색사업자에게는 침해적 기사와 동일 내용의 게시물을 검색에서 제외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위와 같은 규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함. 참고로 유럽연합 의회가 채택한 개인정보보호규칙 수정안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동 규칙이 정하는 5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고 그 개인정보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제3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복제물이나 링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란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해 정정 등이 행해진 내용 또는 제18조의 조정신청 후 당사자 간 임의의 합의에 의해 정정 등이 이루어진 내용을 말함(규칙에 정함).

중재위원회에 관할을 부여한 것은 원스톱 피해구제의 이점뿐 아니라 당해 침해적 기사에 관해 심리한 중재위원회가 그 위법성 여부에 관해 알고 있으며, 중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펌기사를 삭제하는 경우 웹사이트 오퍼레이터는 그 위법성 여부에 관해 고민할 부담이나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 지게 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제의 지연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가 있음.

실무상, 피해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위법한 보도의 복제 · 전파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게시물이 언론보도라면 그 저작권이 처음 보도한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 경우 피해자의 구제신청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개입이 없으면 복제 · 전파된 위법한 보도물의 피해는 사실상 구제받을 수 없을 것임.

[조문 내용 – 제18조의2 ④]

④ 중재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복제 · 전파된 보도내용이 게시된 사이트 관리자 등에게 이 법 제23조의 합의사항 및 조정결정(본조 제3항의 중재위원회 규칙에 의해 구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 법 제25조의 중재결정 또는 법 제27조에 의한 재판의 결과를 통지하고, 그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복제 · 전파된 해당 게시물의 삭제 기타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해 직권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다. 사이트 관리자 등은 지체 없이 중재위원

회로부터 통지받은 위 각 결정 등의 결과 및 직권조정안을 게시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7일 내에 적법한 이의가 없으면 직권조정안의 취지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야 하며, 지체 없이 접근 차단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항 해설]

제4항은 침해적 보도와 동일한 내용의 펌기사 등을 제거하는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되, 인터넷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간이 · 신속한 절차를 마련함.

직권조정안은 이미 위법성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리가 이루어진 동일한 전파 펌기사에 대해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파자에 대한 통지를 약식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약식절차 없이 각 게시자에 대한 개별적 통지와 의견 제시 및 심리절차를 요구한다면 펌기사의 구제는 실제로 불가능할 것임.

[조문 내용 – 제18조의2 ⑤]

⑤ 제1항의 침해적 댓글의 게시자 또는 제3항의 위법한 보도 기사를 복제 · 전파한 게시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을 특정하여 제2항의 조정 결과 또는 제4항의 직권조정안이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된 후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이의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게시자 등의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 이미 내린 해당 조정 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을 취소한다. 게시자 등의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를 상대로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제소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은 제소자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 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정 기간 내에 제소가 없는 경우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은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본항에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의 있는 게시자는 사이트 관리자 등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인지일 후 본항이 규정하는 소정기간 내에 이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항 해설]

피해자와 언론사 또는 웹사이트 운영자 간에 행해지는 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제3자(게시자)의 댓글 또는 펌기사가 삭제되는 등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불복하는 게시자의 이의절차와 사후 법원의 사법심사를 보장하는 규정을 명문화함. 즉, 본항은 댓글 또는 펌기사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재판청구권을 보장함에 주안점이 있음.

이의 있는 게시자의 신원 특정: 실명을 밝힘이 없이 인터넷 ID 또는 이메일 ID만을 사용하여 이의할 수 있음(규칙에 명문화).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시자는 실명을 밝힐 필요 없이 인터넷 아이디(또는 이메일 아이디)만으로 행위할 수 있게 함(인터넷상 명예훼손 분쟁절차에서 가명정체성(pseudonym identity)의 인정).

그밖에 이의제기의 방식,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 심의절차,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 시한(10일 이내), 결정의 송달 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함.

이의에 대한 결정의 불복절차 – 제소: 중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게시자는 실명을 밝혀 제소하여야 하며, 사이트 관리자는 제소하려는 피해자에게 게시자의 신원정보를 밝혀야 함. 사이트 관리자가 게시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트관리자를 피고로 할 수 있음(규칙 사항).

불복하는 당사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위법한 댓글 또는 복제 · 전파된 위법한 펌기사의 삭제 등 침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고, 불복하는 당사자가 게시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침해배제청구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게 됨(피해자는 위 청구 이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병합 제기할 수 있음).

간략한 집단적 통지 방법을 취하게 됨으로써 게시자가 그 통지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권리주장의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트 관리자 등의 게시사항을 안 후 소정기간 내에 이의 및 제소할 수 있도록 함.

[참고 Q&A]

Q. 댓글 피해자가 댓글을 지워달라고 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피해자는 기존의 방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에 찾아가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위법한 댓글이 게시된 게시판 등 시스템을 설치 · 운영하는 언론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에 달린 댓글이 위법하게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댓글의 게시자(인터넷 ID만 적시하면 됨), 게시된 위치(URL), 게시 일자, 게시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중재위원회 접수상담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기가 쓴 댓글이나 펌기사가 삭제된 경우 불복하는 게시자는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가요?

A. 개정안에 의할 때 피해자와 인터넷언론사 간의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중재위원회의 사이트 관리자에 대한 직권조정안에 의해 댓글이나 펌기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정안은 게시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우선 게시자에 불리한 이러한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은 해당 댓글 시스템이나 해당 게재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하여, 게시자도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불복하는 게시자는 게시 후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게시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힐 필요 없이 인터넷 ID 또는 이메일 ID만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이의절차를 밟게 하여 그의 익명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다시 불복하는 게시자는 10일 이내에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재위원회의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은 불복한 게시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게시자의 제소는 피해자의 삭제 등 청구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등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 제소하는 게시자는 소장 제출 시 자신의 실명과 주소 등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VI. 검색에 의한 피해구제 방안 – 제18조의2 제6항 신설

[조문 내용 – 제18조의2 ⑥]

⑥ 피해자는 이 법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의해 삭제, 정정 등 구제가 이루어진 결정 등(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법원의 재판을 검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위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검색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 · 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기타 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검색사업자는 위 피해자의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위 조정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조정을 행한다. 중재위원회는 검색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본항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항 해설]

인터넷신문 등의 기사는 발행 후 거의 모두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 축적되고, 이것은 검색사업자의 검색에 의해 수시로 열람될 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사이버공간에서는 검색됨으로써 존재하게 된다"는 말과 같이 위법한 침해적 보도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펌기사 등이 계속 검색될 수 없도록 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검색과 관련하여 피해를 제거하는 방안이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참조판례: 유럽사법재판소의 2014년 '잊혀질 권리' 판결[13]: 채무불이행으로 자신의 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바 있는 스페인의 변호사가 사후에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경매에 관한 사실을 보도한 신문에 대해서는 그 보도의 삭제를, 구글에 대해서는 그 관련 보도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청구한 사안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신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구글에 대한 청구는 인용한 사안임. 그 판단요지에 의하면 검색엔진은 개별적으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각개 웹페이지의 개인정보를 종합하여 전반적 유포를 가능하게 하고, 개인 이름으로 검색하는 경우 그에 의해 생성된 자세한 개인의 프로파일을 공중에 제공하기 때문에 검색엔진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가중시킨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그 때문에 개인정보를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색엔진의 검색결과 목록에서 링크를 삭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용한 방안임을 지적하였음.

원 기사가 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법원 재판에 의해 삭제되거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그 기사는 검색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해당 보도 중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및 원 기사에 대해 정정 또는 추후보도가 명해진 경우에는 보완수정 또는 추가보충에 의해 업데이트된 내용만이 검색되도록 하여야 하고(정정 또는 추후보도가 명해진 경우에는 원 기사에 그 수정된 내용을 설명하여 첨부하거나 링크에 의한 참조의 방법이 구사될 수 있음), 업데이트되지 않은 원 기사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펌기사 등은 검색에서 제외되도록 하여야 함.

규칙 사항: 제18조의2 제6항에서 구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는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해 정정 등이 행해진 내용 또는 제18조의 조정신청 후 당사자 간 임의의 합의에 의해 정정 등이 이루어진 내용, 법 제18조의2 제5항에 의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또는 직권

13) 유럽사법재판소, 2014. 5. 13. (C-131/12) Google Spain SL and Google, Inc. v. AEPD and Gonźalez.

조정안이 포함된다.

중재위원회가 추후보도청구에 관해 조정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해당 보도에 달린 댓글의 처리에 관한 사항(피신청인이 언론사 등인 경우) 또는 전파되거나 복제된 동일 보도물에 관한 처리에 관한 사항(검색사업자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경우)을 정하도록 함(규칙 사항).

VII. 본조의 적용 관련 조항 – 제18조의2 제7항 내지 제10항 신설

[조문 내용 – 제18조의2 ⑦]

> ⑦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검색사업자, 게시판 또는 사이트 관리운영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본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한다.

[제7항 해설]

본조는 전술한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절차 규정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그 발생근거나 요건 및 효과가 다른 것임. 따라서 본조의 권리행사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음.

다만, 본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나 조치를 이행한 언론사, 검색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면하게 하여, 본조의 준수를 촉구함.

[조문 내용 – 제18조의2 ⑧]

> ⑧ 본조는 제7항에 규정된 사업자 등이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자율 규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제7항에 규정된 사업자 등은 본조의 규정에 의해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사항에 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8항 해설]

제8항 전단: 인터넷 사업자들은 애초부터 이용자들과의 이용약관에 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적 콘텐트를 배제하는 관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력

은 고무 · 촉진되어야 함.[14] 본조의 규정은 위와 같은 사업자 차원의 자율규제에 의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인 구제절차를 정한 것임.

제8항 후단: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고도로 기술적 · 전문적 성격에 비추어 피해구제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업자의 협력이 필수적임.

예를 들어, 기사 댓글란에 다수의 침해적 댓글이 게시되었거나, 콘텐트 사업자가 제공하는 공간에 다수의 침해적 펌기사가 복제되어 있는 경우 피신청인 사업자는 피해자에 관한 침해적 게시물과 그 게시자를 찾아주는 데 협조하여야 함(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사이트 관리자로서 신의칙상 의무).

언론사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와 검색사업자 등은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댓글 시스템 폐쇄, 차후 접근차단, 다수 · 반복 게시자에 대한 조치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자 아닌 관계 사이트(블로그, 카페 등) 관리자의 신원정보를 밝힐 의무가 있음[거부하거나 확인 · 개시할 수 없는 경우 불법 게시물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조문 내용 – 제18조의2 ⑨]

> ⑨ 본조가 규정하는 각종 문서나 결정은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고, 본조가 규정하는 각종 통지, 송달 기타 의사표시의 전달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9항 해설]

피해구제의 각종 방안 및 절차도 정보통신망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설된 본조의 시행상 필요한 통지, 고지, 송달, 기타 의사표시의 전달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이해관계를 갖는 게시자 등이 이의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게시한 사이트의 게시판에 집단적 · 포괄적 게시의 방법을 동원하는 방안을 강구함(위원회 규칙으로).

14) 다만, 그 자율규제는 자칭 피해자의 절차남용이나 사업자의 과잉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피해 고지의 요건 및 절차, 그에 응하여 행할 사업자의 심사의무 및 일응의 차단 조치 등(notice and take-down regime)에 관한 최소의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야 함(영국 2013년 명예훼손법 제5조 참조. 이러한 규정은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정해져야 할 것임).

[조문 내용 – 제18조의2 ⑩, ⑪]

> ⑩ 피해자는 제1항의 위법한 침해적 댓글 또는 제3항의 위법한 침해적 보도의 복제 · 전파 게시물이 존재함을 안 후 1년이 경과하면 그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⑪ 본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내용 – 제18조의2 ⑫]

> ⑫ 중재위원회는 이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 · 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기타 방식에 의해 계속적 · 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유사 뉴스서비스 전자 간행물”)에 의해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 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항 해설 : 신설 취지]

발전과 혁신을 거듭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에 비추어 본법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모바일 뉴스 서비스,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뉴스 펀딩 서비스, SNS에 의한 뉴스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적, 쌍방향 저널리즘에 의한 뉴스서비스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중재위원회가 이들의 특성과 기능을 심의하여 본법의 구제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현행법에 의하면, 실제로 인터넷언론 매체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체가 발행하는 보도(유사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대해서는 그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구제를 위해 중재위원회에 조정 · 중재를 신청할 수 없음.

규칙 사항: 법 제7조 제12항의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 간행물’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여부를 불문한다.

Ⅷ.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 전 언론보도 등의 검색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6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 및 그에 대한 댓글 또는 그와 동일한 위법한 복제 · 전파 게시물의 검색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시행 전 댓글 및 복제 · 전파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 및 그에 대한 댓글 또는 그와 동일한 위법한 복제 · 전파 게시물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한다.

Ⅸ. 관련 개정

[개정 조항 – 제2조 제15호]

제2조(정의)
〈현행〉 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개정안〉 15. “언론보도”란 언론이 전달의 형태나 수단 여하에 불구하고 공공에게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설]

언론중재법상 ‘언론보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함(언론중재법 제1조 참조).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미디어 활동에는 기존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뿐 아니라 그 사실주장의 전파와 의견 표현(논평 등)도 포함되어야 함. 또한 이른바 뉴스 기사나 프로그램 이외에 교육적 또는 연예오락 기사나 프로그램도 그에 의해 개인법익이 침해될 수도 있어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체하기 위함.

[신설 조항 – 제22조 제22~25호]

2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3. “검색”이란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 정보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아 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24. “검색사업자”란 제23호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5. “게시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삭제 조항 – 제5조 제2항]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삭제 이유]

사회상규나 피해자의 동의는 법에 규정됨으로써 창설되는 효력을 갖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법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며(따라서 삭제되더라도 무방한 것), 진실의 항변 및 상당성 항변은 명예훼손에만 적용되는 위법성 조각사유일 뿐, 기타 인격권 침해에서는 항변이 될 수 없음.

[개정 조항 – 제7조 제1항]

〈현행〉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 ·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그 전파나 매개 또는 검색(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 ·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타 개정 조항]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조항에 침해배제청구를 삽입
① …제17조의3에 따른 침해배제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

제31조의2(정보통신망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준용) 제17조의3 및 제18조의2의 규정은 조정절차에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